

2018년 제2회 문화유산회복 정책토론회

불법반출 문화재 환수 현황과 과제

- 일시 | 2018. 4. 11.(수) 13: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2018년 제2회 문화유산회복 정책토론회

개회	13:30~13:35	5'	◦ 개회선언/국민의례/내·외빈 소개
	13:35~13:45	10'	◦ 축 사: 이인영 국회의원 김두관 국회의원 전재수 국회의원 이원욱 국회의원
	13:45~13:50	5'	◦ 인사말: 김민석 민주연구원 원장 이상근 (재)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좌장	공 구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장(한양대 의대 교수)		
주제 발표	13:55~14:25	30'	◦ 주제1: 약탈 문화재 환수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 경향 ◦ 발 표: 김경임 (재)문화유산회복재단 고문/전 튀니지 대사
			◦ 주제2: 문화유산 회복을 위한 제안 ◦ 발 표: 이상근 (재)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지정 토론	14:25~14:45	20'	◦ 김예경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 김동영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국제협력과장 ◦ 주 경 불교사회연구소장 ◦ 김영관 (사)대한황실문화원 문화재환수위 연구위원
종합 토론	14:45~14:55	10'	◦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구황실재산법 개정의 타당성

(2018.4.11.국회정책토론회 자료집)



김영관 박사

캐나다 McGill대학교 비교종교철학박사(PhD)
대한황실문화원 문화재환수위 연구위원/
하버드대학 옌칭연구소 방문연구교수

목 차

- A. 구황실재산법 제정의 역사적 배경
- B. 불법적으로 반출 편취 탈취 몰수된 구황실재산들 그리고 ‘구황실재산법’의 위헌성 여부
- C. 역사 바로 세우기와 일제식민잔재 청산의 완성으로서의 구황실재산 복원과정
참고자료

A. 구황실재산법 제정의 역사적 배경

구황실재산법은 대한제국 기에 황실관련 업무를 관장하던 궁내부의 위상과 권위를 격하하고 그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의도적으로 개편되어 설치된 이왕직청에 그 뿌리가 있다.

해방 후 1945년 11월 8일 미군정 훈령으로 구황실 재산 관련 업무를 관장하던 이왕직청이 구황실사무청으로 개조되어 출범케 됐다. 일제강점기 말까지 이왕직청이 관장한 황실 재산 중 임야, 대지, 전답의 총면적은 약 1억5519만8532평에 달했다(Cf. 월간 ‘신동아’ 1968년 8월호 & 국회도서관, 『이왕가세습재산유서조』 [李王家世襲財産由緒調]).

이후 1948년 8월 16일 구황실사무청이 구왕궁재산관리위원회로 그 명칭이 변경됐고,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의 주도하에 국회에서 구황실재산처리법이 제정되면서 대한제국황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구황실 재산 전체가 대한민국정부의 소유로 모두 불법적으로 탈취되고 말았다.

이렇게 이승만이 황실의 재산을 주도적으로 대한민국정부의 소유로 탈취한 이유는 영친왕을 정치적인 라이벌로 여겨 황실의 ‘힘’을 빼버릴 목적으로 취한 여러 조치 중의 하나였음을 2006년 10월 24일 자 주간동아의 ‘땅 한 평 안 남기고 공중분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명백히 밝히고 있다.

1955년 6월 8일 구황실재산관리위원회는 구황실재산사무총국으로 개편되면서 그 사무국이 창덕궁 내에 설치됐는데, 1960년 6월 6일 새벽 사무총국 안에 화재가 발생해 청사(목조 2층 80평)와 중요 서류 집기 등이 모두 전소되어 아침 5시 10분경에 진화됐다.



<1960년 6월7일 구황실재산관리총국의 화재사건을 보도한 '동아일보'기사>

1960년 6월 7일 자 동아일보 '구황실재산관리총국을 전소...농후한 방화 혐의' 제목 하의 기사에 의하면 △방화 △누전 △숫불의 세 각도에서 화재의 원인을 수사했던 경찰은 의도적인 방화에 무게를 두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왕직청으로부터 구황실의 재산목록을 모두 이관 받아 보관하고 있던 곳이 방화혐의로 인한 화재로 당시 경찰이 추정하는 이유는 총국 직원들이 정부의 감시를 피해 황실재산을 부정당한 방법으로 유출하여 상당 부분 처분한 사실이 발각되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었다.

1960년 총국장으로 새로 임명된 오재경 대한여행사 이사장은 당시 문교부 국장이었던 이창석에게 황실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조사하도록 지시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창석 국장은 어려움에 직면했다. 관련 서류가 부실해 면밀한 조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간신히 재산목록을 만들어 정리에 착수하려는 순간 화재가 발생하여 그나마 남아있던 재산목록도 모두 사라지고 만 것이었다. 이 국장은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

“구황실 사무처에 가보니, 신빙 서류가 하나도 구비되어 있지 않아 누가 무엇을 어떻게 속여서 해먹었는지 알 수 없어서 놀랐습니다. 그나마 조사를 해서 대강이나마 증거서류를 만들어놓으니까 화재가 나서 다 타버렸으니, 그것은 분명히 방화였다고 생각합니다” (Cf. 김을한. 『조선의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 2010).

이렇게 이승만정부에 의해 몰수된 구황실재산은 구황실재산사무총국 안의 부패한 공무원들의 농간으로 불법적으로 민간에 매각되거나 매도되고 말았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황실재산사무총국은 1961년 10월 2일 폐지되어 문화재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관장하는 문화재관리국에 흡수되고 말았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구황실재산법은 1962년 4월 10일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제정되었다:

구황실재산법

[시행 1962.4.10.] [법률 제1050호, 1962.4.1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본법은 구황실재산을 역사적, 고전적 문화재로서 영구히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과 별도로 구황실재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유의 대상) ①구황실재산은 국유로 한다.
 ②전항에서 구황실재산이라 함은 구한국황실의 소유에 속하였던 재산으로서 구리왕직에서 관리하던 일체의 동산, 부동산 기타의 권리를 말한다.
 ③전항의 재산에는 그 재산에 따르는 의무를 포함한다.

제3조 (재산의 구분) ①구황실재산은 영구보존재산과 기타재산으로 구분한다.
 ②영구보존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각령으로 지정하는 재산을 말한다.
 <개정 1961.10.17.>

1. 중요한 단, 묘, 사, 원, 전, 궁, 릉, 원, 묘와 이에 따르는 건조물과 그 부지
2. 중요한 미술품, 역사적 기념품 또는 문적
3.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4. 전각호에 유사한 재산으로서 영구보존의 필요가 있는 것

③기타재산은 전항에 규정한 이외의 일체재산을 말한다.
 ④기타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갑종재산과 을종재산으로 구분한다. 갑종재산이라 함은 국가가 직접 공공용, 사무용, 사업용이나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

하고, 을종재산이라 함은 갑종재산이외의 재산을 말한다. <신설 1961.10.17.>
 제3조의2 (재산의 운용 및 처분 등 제한) ①영구보존재산과 기타 재산 중 갑종재산은 이를 양도하거나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단, 갑종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이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기타 재산 중 을종재산은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단, 공공단체가 직접 공공용, 사무용, 사업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무상으로 이를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③제1항 단서와 전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한다.
 [본조신설 1961.10.17.]

제4조 (생계비의 지급등)

①구항족의 생계유지상 필요할 때에는 제3조의 기타재산의 을종재산 중에서 이를 구항족에게 양여하거나 또는 구항실재산특별회계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생계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전항의 구항족이라 함은 본법 시행당시 생존한 구항실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로서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1962.4.10.>
 1. 약선제 윤씨(순종의 부인)
 2. 삼축당 금씨(고종의 부인)
 3. 광화당 리씨(고종의 부인)
 4. 사동궁 금씨(리강의 부인)
 5. 리은과 그 배우자
 6. 리덕혜(고종의 녀)
 ③구항실의 기부행위로 설립된 교육기관의 유지경영상 필요한 때에는 제3조의 기타재산의 을종재산 중에서 이를 그 교육기관에 양여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할 재산의 종류와 그 한도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⑤전4항에 의하여 재산을 양여할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은 당해재산의 관리청과 협의한 후 각의의 의결을 거쳐 내각수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1961.10.17.]

제5조 (영구보존재산관리청)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구보존재산의 관이사무는 문교부장관소속하의 문화재관리국이 관장한다.

[전문개정 1961.10.17.]

제6조 (기타재산관리청) ①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재산은 그 재산의 용도와 목적에 따라 재무부, 농림부 기타 관계부처가 이를 관리하되 그 재산구분과 관리청이 확정될 때까지는 전조의 문화재관리국장이 이를 관리한다.

②전항의 재산구분과 그 관리청의 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구항실재산처리위원회를 둔다.

③구항실재산처리위원회의 조직, 기능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61.10.17.]

제7조 (기타재산의 처분) ①구항실재산처리위원회는 제3조제4항의 기타 재산 중 을종재산으로서 국가에서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제4조의 구항족 및 교육기관이나 제3조의2 제2항의 공공단체에 양여하거나 일반에게 공매할 것을 재무부장관과 전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재산관리청에 건의할 수 있다.

②재무부장관은 전항의 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재산의 관리청과 협의한 후 제4조제5항의 절차에 의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항족에게 재산의 양도가 있었을 때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항족에 대한 매월의 생계비지급은 이를 중지한다.

[전문개정 1961.10.17.]

제8조 (구황족의 생계부조책임) 전조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의 구황족에 대한 생계부조의 책임은 구황실재산중 농경지와 임야를 관리하는 기타재산관리청이 이를 부담한다.

[전문개정 1961.10.17.]

제9조 삭제 <1961.10.17.>

제10조 삭제 <1961.10.17.>

제11조 (특별회계) 구황실재산의 세입세출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12조 (시행령) 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각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1.10.17.>

부 칙 <법률 제339호, 1954.9.23.>

제13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14조 구왕궁재산처분법은 폐지한다.

부 칙 <법률 제748호, 1961.10.17.>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재산의 관리청이 전부 확정된 때에는 각령으로 정하는 일자에 구황실재산법은 폐지되고 그 재산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을 적용한다. 단, 구황족에 대한 재산의 양여가 있을 때까지의 그 생계부조의 책임은 제8조의 기타재산관리청이 계속 이를 부담한다.

부 칙 <법률 제1050호, 1962.4.10.>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B. 불법적으로 반출 편취 탈취 몰수된 구황실재산들 그리고 ‘구황실재산법’의 위헌성 여부

본 법 제1조와 제2조(목적과 국유의 대상)는 “경제적 기본권 중 재산권과 법 앞의 평등권”에 대해 위헌적이라 할 수 있겠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구황족 삶의 터전이 되는 궁궐들과 재산들을 문화재화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었는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통과되어 만들어진 법이므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지만 당시 권위적이며 위압적이었던 정부의 권력 하에서 국회의 입법행위는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었고 국민이었던 구황족들이 법 앞에서의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받는 일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아무리 당시 상황이 위협적이라 해도 법 시행에 따라 재산권을 침해받게 된 구황족들에게는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23조 3항(“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에 의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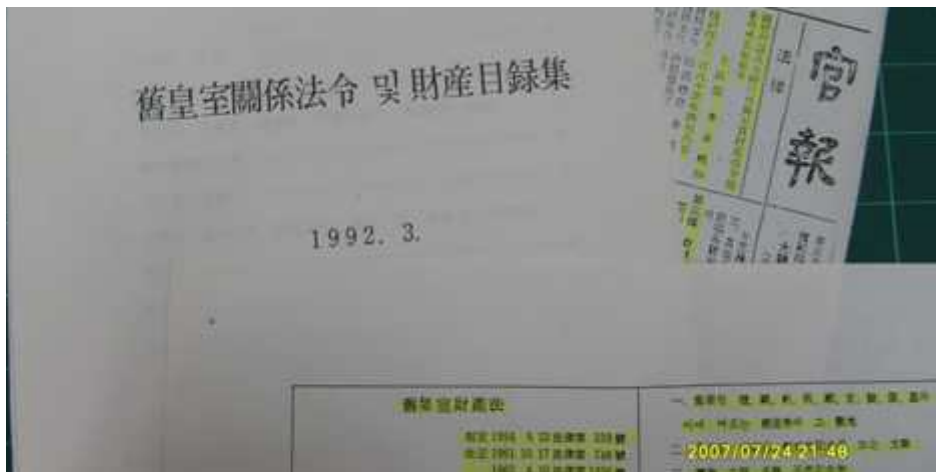
또한 본 법 제4조(생계비의 지급 등)는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1조 1항(“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과 헌법 제2장,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리고 헌법 제2장, 제14조(“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와 헌법 제2장, 제34조, 1항/2항(“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에 따라 헌법이 정하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자유권적 기본권 중 주거의 자유 등에 위배된다.

구황족 상속의 범위와 순위를 정하는 본 법 제4조 2항은 민법 제1002조가 정하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 속하는 황족들을 포함하지 않고 덕혜옹주까지 만 국한한 것 역시 헌법에 위배된다 할 수 있겠다.

위와 같이 구황실 재산들이 그 소유권과 관리권을 갖고 있던 대한제국황실 황족들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조선왕실과 대한제국황실의 역사를 왜곡하고 폄하-훼손했던 친일역적매국노들의 편에 섰던 이승만정권에 의해 대부분 편법적이며 불법적으로 민간에 반출되거나 불하되었고 강제적으로 대한민국정부의 소유로 몰수되고 편취되고 만 것이었다.

더구나 미군정의 구황실관련 정보부족으로 이승만정권의 불법적인 구황실재산 탈취행위들은 통제 불능이었고 이승만정권은 광복이 되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영친왕을 비롯한 대한제국황족들의 환국을 방해하는 악행 또한 서슴치 않았다.

이렇게 구황실재산을 몰수하여 관리하던 구황실재산사무총국과 구황실재산관리위원회가 문화재관리국으로 개편되어 1968년 7월 24일 문화공보부 소속으로, 1989년 12월 30일 문화부로, 1993년 3월 6일 문화체육부로, 1998년 2월 28일 문화관광부로, 1999년 5월 24일 문화재청으로, 그리고 2008년 2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변경됐다.



<구황실재산법 관련 자료들. 사진제공-MBC>

특히 부정 반출된 황실 재산 중 '대표' 격으로 거론되는 것은 서울 성북구 월곡동에 위치한 배재대학 대지였다. 조사에 착수한 검찰은 모두 7만5000평의 땅이 이승만 대통령의 모교인 배재대학에 불과 평당 250환씩에 불하됐다고 하며, 윤우경 전 구황실재산사무총국장에 대한 형사처벌을 검토했다.

그러나 윤 전 국장은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했다. 윤 전 국장은 1968년 월간 '신동아' 10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1958년으로 기억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배재대학에서 땅을 불하해달라고 하니 현장을 안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술회했다. 대통령의 모교를 위해 조선 황실의 죽은 왕자도 자리를 옮겨야 했다. 배재대학에 불하된 땅에는 왕자묘(王子墓)와 귀인묘(貴人墓)가 있었는데, 대학 건물 착공을 위해 경기 고양시 서삼릉으로 이장했다고 한다.

이 땅은 반환 소송으로까지 이어진 최초이자 최후의 황실 재산이었다. 그러나 역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황실의 품으로 돌아오는 데 실패했다. 1964년 대법원은 이 토지의 불하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구황실 재산을 민간에 불하할 때는 구황실 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 경우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조선 황실에 대해 연구해온 서울 교대 안천 교수는 “그러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불하된 황실 재산이 2000여 건에 달했기 때문에 천문학적 액수의 소송이 줄줄이 이어질 것을 우려한 박정희 대통령은 배재대학 땅 문제를 정치적으로 무마해버렸다”고 말했다(Cf. 안천, 『황실학논총-일월오악도』, 1998).

황실재산소유권 관련 주요 사건

◆ 해원옹주 하남 토지소유권 소송

황족의 재산 관련 소송으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대한제국 황위 계승자로 주목받았던 해원옹주의 하남시 땅 반환소송이다. 2006년 9월 대한민국의황족회는 대한제국 30대 황위 승계식을 열고 고종의 손녀이며 의친왕의 둘째 딸인 이해원(해원옹주, 현재 95세)씨를 여황으로 추대한 바 있다. 대한민국의황족회는 대한제국 황실 복원을 위해 뜻을 같이한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다.

해원옹주는 2012년 3월 고종의 후손 15명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해원옹주 부친(양부)인 이기용씨 소유의 하남시 땅 1만2700㎡가 1965년 토지조사과정에서 부당하게 정부 소유로 넘어갔다”며 “정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황실 후손에게 땅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이기용씨는 고종의 5촌조카로, 일제강점기에 황실 직계 호적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해원옹주를 포함해 의친왕의 자녀들이 이기용씨의 양자로 입적된 바 있다. 해원옹주 등은 조선총독부 기록에 해당 토지가 이기용씨 땅으로 나와 있으며, 1965년 토지조사과정에서 지목변경과 토지합병 등을 빌미로 부당하게 국유화됐으며 해원옹주를 포함한 이기용씨의 후손들이 이를 상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2012년 9월 “해당 토지는 적법하게 국유화됐으며, 민법상 취득시효가 지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1938년 일본 육군성이 포사격 연습장용으로 매입한 후 광복과 미군정을 거쳐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귀속됐다”고 밝혔다.

◆ 배재대학 부지 소송

현재 배재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의 땅 7만1950평은 대한제국 시절 대원군 형 흥인군의 5대손 이우인씨의 소유였으며, 광복 후 구황실재산사무총국에 신탁돼 있던 상태였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이를 모교인 배재학당에 평당 250원(당시 시세의 1/30 수준)이라는 헐값에 특허 매각했다는 제보가 이어졌고 이우인씨는 1965년 국가를 상대로 하월곡동 토지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검찰은 조사에 착수해 구황실재산사무총국장에 대한 형사처벌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구황실재산을 민간에 불하할 때는 구황실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는데, 이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이씨의 승소를 예상케 했었다.

그러나 8년여의 지리한 소송 끝에 1973년 대법원은 “해당 토지는 이씨의 땅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린다. 이에 대해 당시 언론인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천문학적 액수의 황실 재산 소송이 줄줄이 이어질 것을 우려해 정치적으로 무마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숙명학원 경영권·재산권 반환 청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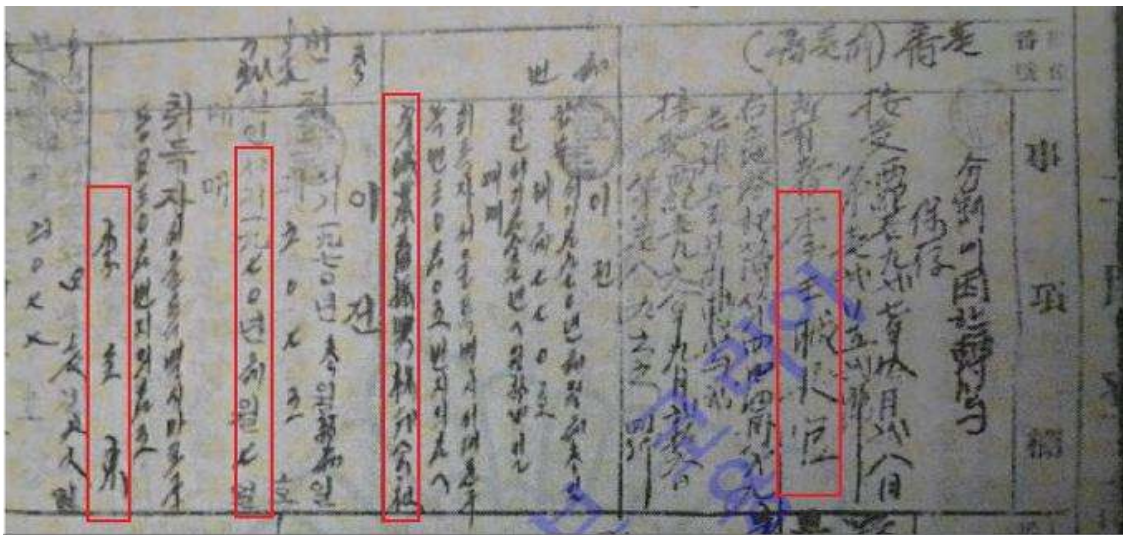
영친왕의 둘째 아들인 이구씨는 1964년 숙명학원의 경영권을 주장하며 문교부에 청원을 제기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일본에 머물다 1963년 부모인 영친왕·이방자 여사와 함께 귀국한 이구씨는 본인이 숙명학원 설립자(순헌황귀비)의 직계 손자이며 황귀비의 재산으로 설립된 재단인 만큼 본인에게 재산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현 숙명학원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이사진을 교체하고 본인이 선임하는 인사에 학교 경영권을 주어야 한다고 문교부와 국회 문공위에 청원했다. 문교부는 이에 행정권을 발동해 숙명학원 일부 이사진으로부터 사표를 받아내고 이구씨가 지목하는 인물로 이사를 임명하는 등 직접 개입했다. 숙명학원의 기존 이사진과 이구씨 측 이사를, 국회 문공위와 문교부 관계자들은 1년 이상 서로 책임을 물으며 분규를 계속했고, 숙대의 준국립대학화 등 논의가 이어지다 1967년 결국 제3의 인물들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자료제공-월간조선>

빼들려진 황실 재산은 ‘투기’에도 활용됐다. 1964년 4월30일 ‘동아일보’는 ‘구황실재산 14만 평 무연고자에 불하 ... 주민들 진정으로 수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경기 양주군

구리면 매갈리와 사노리의 황실 재산인 동구릉 임야를 농림부가 연고가 없는 삼중건설(대표 신규식)에 개간 사업을 이유로 불하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삼중건설은 유령회사였다. 이 회사는 평당 5원에 불하받은 이 땅을 제삼자에게 평당 35원씩 받고 5만 평을 팔아치웠다. 나머지 9만 평은 불하 당시 ‘공작비’ 조달을 맡은 한 개인에게 법적 수속 없이 분배했다고 한다.

전두환의 장인 이규동은 국유재산 환수목록에서 누락된 황실재산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산 19-91번지 일대 약 56만평 현재 시가 2조원 이상의 땅을 매매서류를 위조하여 1970년 2월과 8월에 화성농축진흥주식회사(대표이사 전보건, 전두환 일가)를 거쳐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해 황실재산을 불법적으로 편취했다는 의혹을 MBC는 2013년 8월 18일 뉴스에서 보도하기도 했다.



<이왕직장관 명의로 된 황실재산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산 19-91번지 토지가 1970년 이규동 명의로 변경된 등기부등본. 자료제공-MBC>

이런 식으로 해서 황실 재산은 야금야금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 1963년 문화재 보호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황실 재산의 처분이 단행되기 시작했을 무렵, 황실 토지재산의 총면적은 1억141만여 평이었다. 일제강점기 말 1억5519만여 평이었으니 광복 후 18년 동안 5378만여 평이 처분된 셈이다. ‘신동아’(1968년 8월호)는 “자유당 시절의 재산 처분 경유를 짐작컨대 대개 규모가 큰 것은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고, 작은 것은 사무총국 단독으로 처분한 흔적이 역력하다”고 썼다.

1963년 이래 영구보존재산 행정재산을 제외한 잡종재산의 처분 량은 2817만1107평으로서 현재 남아 있는 구황실 소유의 토지재산은 총 7364만4000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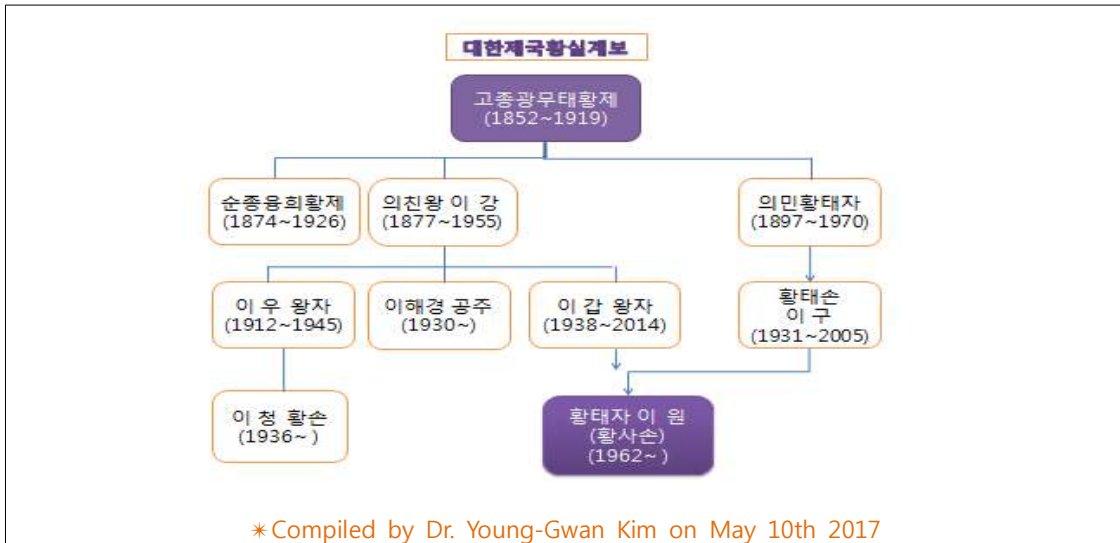
그런데 여기서 특히 문제 되는 것은 건국 이후 60년경까지 자유당 치하의 구황실재산사무총국에서 처분했다고 볼 수 있는 5378만평 중에는 서울 시내 도처에 산재해 있던 구황실 재산의 노란 자위라 할 수 있는 대지 1만399평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원남동, 와룡동, 정동, 명동, 원서동, 안국동, 청과동, 회현동, 제기동, 종암동, 휘경동, 성북동 등지에는 영구보존재산인 각 궁궐과 행정재산 이외에도 상당한 황실 소유의 대지가 있었다. 이 중 1만399평이 광복 후부터 4·19까지의 기간에 행방불명됐다(‘구황실재산’, ‘신동아’ 1968년 8월

호).

빨빨이 흩어지고 남은 토지재산 7000여 평마저도 1989년 관리 주체가 문화재청에서 재정경제부로 넘어가면서 거의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황실 재산은 서울에 있는 5개 궁과 전국 13개 능밖에 없고 신군부정권 시기 재정부로 이관된 7000여 평의 잡종재산은 민간에 매각되어 모두 처분되고 말았다(Cf. ‘구황실관계법령 및 재산목록집’, 문화부 문화재관리국, 1992.3).

C. 역사 바로 세우기와 일제식민잔재 청산의 완성으로서의 구황실재산 복원과정

광복 후에 친일역적매국노들의 편에 섰던 이승만정권 하의 권력자들과 모리배들에 의해 구황실재산들은 불법적이며 편법적으로 탈취됐지만 그나마 남아 있던 황실 재산들이라도 구황실재산법 개정을 통해 현존하는 대한제국황실 황족들에 돌려주고 이를 정당하게 복원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이원(李源, 1962~) 황태자(황사손) 전하. 고종황제의 증손으로 2005년 이구(李玖, 1931~2005) 황태손의 양자로 입적되어 대한제국황실 제5대 수장으로 재위(在位)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다시 말하면 개헌논의가 한창인 요즘 입헌군주제로의 개헌은 고사하더라도 21세기 역사바로세우기와 국가사회의 정의를 외치는 대한민국 20대 국회가 가장 시급히 논의하고 실행해야 할 개헌의제들 중의 하나는 구황실재산법을 개정하여 부당하게 국고로 몰수된 구황실재산들을 황족들에게 반환-복권하여 주거나 정확한 보상처리를 통해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바로 세워야 하겠다.

고종황제의 내탕금으로 설립되어 운영된 상해임시정부에 대한민국 건국의 뿌리가 있다고 역설한다면 대한제국의 법통과 구황실을 인정한 상해임시정부의 뿌리인 대한제국황실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징적인 구심점으로서의 그 특수한 역사전통 문화유산적인 신분과 지위가 복원되어야 한다. 더구나 참혹했던 왜곡과 편견 속에서도 역사문화전통의 맥을 잇고 있는 대한제국황실에 대한 국가차원의 신분보장과 이에 따른 예우방식 역시 제도화 되어져야 한다.

고종황제의 비자금

조선의 왕에게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내탕금'이 있었다. 태조 이성계는 고려 말 획득한 토지 등 개인 재산을 내수소라는 기구를 두어 별도로 관리토록 하고 거기서 마련한 자금을 마음대로 썼는데, 이것이 내탕금이다. 극심한 흉년이 들면 왕이 내탕금을 풀어 국민들을 먹여 살릴 정도로 내탕금의 규모는 컸다. 대한제국의 황제들도 마찬가지였다.

고종은 1909년 외교고문이며 특사였던 허머 힐버트에게 중국 상하이에 소재한 독일계 은행 덕화은행에 예치된 예금 51만 마르크(현재 가치 250억원)를 인출해 오라는 특명을 내린다. 그러나 중국에 도착한 힐버트는 예금을 인출해 줄 수 없다는 은행 측의 답을 들었고, 당시 예금은 이미 일본에 의해 사라진 상태였다. 힐버트는 수십 년 동안 이 자금의 행방을 찾아 헤맸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실제 해당 은행에 비치된 비자금은 그 두 배인 100만 마르크에 달했다는 문서가 나왔다. 명지대 인문과학연구소 정상수 연구교수는 최근 독일 외교부 정치문서보관소가 소장하고 있는 외교문서의 복사본을 판독한 결과, 고종이 1903~1906년 덕화은행(현재 도이체방크에 합병)에 맡긴 비자금은 100만 마르크에 이른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일본이 1908년 독일정부와 합의해 51만 마르크를 가져간 사실은 확인되지만, 나머지의 행방은 묘연하다"고 말했다. 국내 사학자들은 "고종은 독립운동 지원을 위해 내탕금을 상당액 해외에 비치,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자료제공-월간조선>

이런 복원-복권 과정을 통해 왜곡된 친일역적매국사관에 매몰된 현 대한민국사회는 국격회복과 더불어 올바른 역사관으로 바로 세워지게 되며 일제식민잔재들은 온전히 일소(一掃)될 수 있게 된다.

이로서 현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제국에서 기인된 그 역사적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올바른 이념-윤리성 역시 표본화 하여 줄 수 있게 된다. 또한 우리가 앞으로 함께 살아가야 할 사회는 보다 더 정의롭고 보편타당한 실존적인 공간들로 일신될 수 있게 된다.

<참고자료>

- 김을한. 『조선의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 2010.
- 권영성, 『헌법학원론』. 1994.
- 국회도서관. 『이왕가세습재산유서조(李王家世襲財産由緒調)』.
- 동아일보. “구황실재산관리총국을 진소...농후한 방화 혐의.” 1960.06.07.
- 동아일보. “구황실재산 14만 평 무연고자에 불하 ... 주민들 진정으로 수사.” 1964.04.30.
- 문화부 문화재관리국. 『구황실관계법령 및 재산목록집』. 1992.03.
- 박찬중. 『구왕궁재산처분법의 위헌성 여부 분석』. 1998.
- 신동아. “구황실재산.” 1968.8.
- 안 천. 『황실학논총-일월오악도』. 1998
- 이해경. 『마지막황실의 추억』. 서울: 유아이북스, 2017.
- 월간조선. “전국 곳곳에 숨어 있는 황실재산, 주인은 누구?.” 2013.02.
- 주간동아. “땅 한 평 안 남기고 공중분해.” 2006.10.24.
- 한겨레21. “황족의 품위가 말이 아니오.” 2006.08.24.
- MBC. “구황실재산법은 위헌적이다.” 2007.07.26.
- MBC. “이창석 오산땅...전씨 일가가 가로챈 나라 땅.” 2013.08.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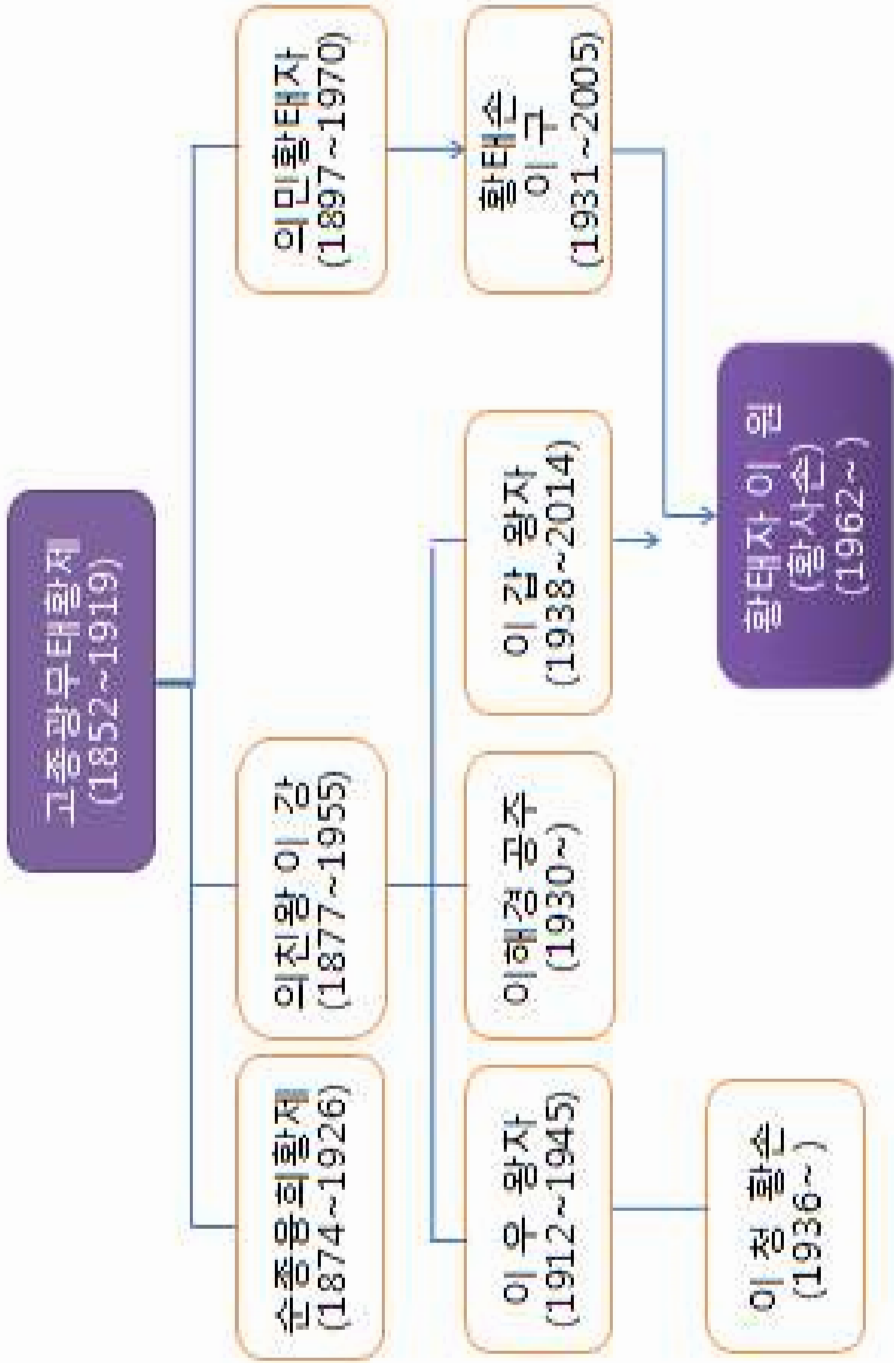
구황실재산법의 위헌성 여부


- **본 법 제1조와 제2조(목적과 국유의 대상)는 “경제적 기본권 중 재산권과 법 앞의 평등권”에 대해 위헌적이다.**
-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23조 3항(“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에 의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본 법 제4조(생계비의 지급 등)는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1조 1항("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2장,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2장, 제14조("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2장, 제34조, 1항/2항("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에서 정하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자유권적 기본권 중 주거의 자유 등에 위배된다.

- 구황족 상속의 범위와 순위를 정하는
 본 법 제4조 2항은 **민법 제1002조가** 정하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 속하는 황족들을 포함하지
 않고 덕혜옹주까지만 국한한 것 역시 헌법에 위배
 된다.
- 구황실 재산의 소유권과 관리권을 갖고 있던 대한제
 국황실 **황족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편법적이며 불
 법적**으로 민간에 반출되거나 불하, 강제적으로 대한
 민국정부의 소유로 몰수-편취 됨.

대한제국황실계보





● 주최 | 민주연구원

● 주관 |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 (재)문화유산회복재단